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1. 31 선고 2021가단23242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

담당변호사 목동호, 문주연

변 론 종 결 2022. 12. 20.

판 결 선 고 2023. 1. 3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의정부시 C 대 81.1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20. 3. 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. 3. 11. 접수 제26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, 갑 제2호증, 갑 제3호증의 1, 2, 갑 제4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, 을 제5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

1) 원고는 2016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역 소재 점포를 F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의류점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7. 1. 31. 소외 D에게 위 매장운영 및 이와 관련한 입출금 업무, 채무변제 등의 업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. 4. 15.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.

2)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0080호(본소)로 위 계약이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D는 같은 법원 2019가합570097호(반소)로 위 계약이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위 매장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20. 7. 10. 원고에 대하여 D에게 4,206,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, 원고의 본소 청구와 D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3)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1. 4. 29. 위 이양계약이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위 제1심 판결을 “D는 원고에게 110,847,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25.부터 2021. 4. 29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D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”고 변경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[2020나2025923(본소), 2020나2025930(반소)],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(이하 ‘A 정산금 채권’이라 한다).

3)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36357호로 위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12. 15. D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

19,206,654원으로 결정하였으며, 위 결정은 같은 달 24. 확정되었다(이하 ‘A 소송비용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소외 G의 원고에 대한 채권

1) G은 D의 배우자이다.

2)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3891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5. 25. “원고는 G에게 1억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판결을 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(이하 ‘B 대여금 채권’이라 한다).

3) G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37389호로 위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22. 2. 16. 원고가 G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8,295,541원으로 결정하였다. 위 결정은 2022. 2. 21. 원고에게 도달되어 같은 해 3. 1. 확정되었다(이하 ‘B 소송비용 채권’이라 한다).

다.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등

1) 피고는 D의 아들이다.

2) D는 2020. 3. 4. 피고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1.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

라. G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

1) G은 B 대여금 채권 “원금 1억 1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. 4. 12.부터 2022. 2. 28.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8,081,095원 합계 148,081,095원”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2타채5620호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A 정산금 채권과 위 정산금 채권이 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A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.

2) 위 법원은 2022. 3. 4. “A 정산금 채권 및 A 소송비용 채권을 압류하고, D는 원고에게 위 채권에

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원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,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“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,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2. 3. 10. D에게, 같은 달 24.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으며, 같은 해 4. 1. 확정되었다(이하 ‘1차 압류 및 전부명령’이라 한다).

3) G은 다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타채51828호로 B 소송비용 채권 중 5,305,69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B 소송비용 채권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. 위 법원은 2022. 4. 15. 위 신청취지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며,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2. 4. 20. D에게, 같은 달 29.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고, 같은 해 5. 7. 확정되었다(이하 ‘2차 압류 및 전부명령’이라 한다).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D에 대하여 2019. 4. 15. 기준으로 A 정산금 채권과 그 이후 발생한 A 소송비용 채권을 가지고 있다. D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와 D 사이의 위 증여계약의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G이 B 대여금 채권과 B 소송비용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A 정산금 채권과 A 소송비용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A 정산금 채권과 A 소송비용 채권은 모두 G에게 전부되어 남아있지 아니하다. 원고가 D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가.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에 부수되는 권리인 이상 채권자취소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, 이는 사해행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

한다.

나. 1차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해 남아있는 원고 채권액 계산

1) G의 청구금액(B 대여금 채권)

G의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 중 이자는 38,117,260원(= 110,000,000원 x 1054일/365일 x 12%,
원 미만 버림]이 되나 계산 착오로 38,018,095원(1054일이나 1053일로 계산)만을 청구하였으므로
G의 계산에 따른다.

○ 합계 148,081,095원

2) 1차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까지(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된 2022. 3. 10.) 원고의 D에
대한 채권

○ A 정산금 채권

원금 110,847,497원

이자 22,655,406원[= 11,175,857원(110,847,497원 x 2019. 4. 25.부터 2021. 4. 29.까지
736일/365일 x 5%) + 11,479,549원(110,847,497원 x 2021. 4. 30.부터 2022. 3. 10.까지
315일/365일 x 12%)]

합계 133,502,903원

○ A 소송비용 채권

원금 19,206,654원

이자 199,959원(= 19,206,654원 x 확정일 다음날인 2021. 12. 25.부터 2022. 3. 10.까지
76일/365일 x 5%)

3) 전부되고 남은 원고 채권액의 계산

○ G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A 정산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, A 소송비용 채권 중 이자, A 소송비용
채권 중 원금 순으로 전부되어 대등액에서 소멸

148,081,095원 - 133,502,903원 - 199,959원 - 19,206,654원 = -4,828,421원

○ A 소송비용 채권의 원금 4,828,421원 남음

다. 2차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남은 원고 채권액의 계산

G의 B 소송비용 채권은 원금 8,295,541원인데 G이 위 채권액 중 5,305,69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남아있는 A 소송비용 채권 4,828,421원을 전부받았으므로 2차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A 소송비용 채권은 없다.

라. 앞에서 본 바와 같이, 결과적으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A 정산금 채권 및 A 소송비용 채권은 위 1차 및 2차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모두 G에게 전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가 D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.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선희